

사천시도시계획조례안

의안 번호	28
----------	----

제출일자	2003. 8. 19
제출자	사천시장

1. 제정이유

- 가. 종전에는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하여 운용하였으나,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02. 2. 4) 및 동법률시행령(2002. 12. 26)을 제정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의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며,
- 나. 종전의 사천시도시계획조례 및 사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 관한조례, 사천시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지향하는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방법을 정함(안 제4조 내지 제5조)
- 나.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을 정함으로서 절차 간소화등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 하고자 함.(안 제6조)
- 다.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매수불가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범위를 정함.(안 제7조, 제8조)
- 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정함.(안 제9조)
- 마. 개발행위 중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정함.(안 제10조)
- 바.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정함.(안 제11조)
- 사. 개발행위허가시 표고와 경사도의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토석의 채취허가·토지분할 제한·물건적치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함.(안 제12조 내지 제17조)
- 아. 주거·상업지역에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과 공업지역에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형질변경과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정함.(안 제18조)

- 자. 이행보증금 예치의무 면제되는 공공단체와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산정·방법을 정함(안 제19조, 제20조)
- 차.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허용 범위를 정함.(안 제21조 내지 제41조)
- 카.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허용범위를 정함.(안 제42조 내지 제44조)
- 타.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을 정함.(안 제45조)
 - 도시지역은 현행 조례를 적용하고, 비도시지역의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이하이며 계획관리지역은 40%이하임.
- 파.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을 정함.(안 제46조)
 - 취락지구 60%이하, 개발진흥지구 40%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 40%이하, 농공단지 60%이하,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80%이하임.
- 하.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을 정함.(안 제49조)
 - 도시지역은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는 현행 조례를 적용하고,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100%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130%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17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3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70%이하, 준주거지역은 300%이하, 비도시지역의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은 80%이하이며 계획관리지역은 100%이하임.
- 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을 정함.(안 제50조)
 - 개발진흥지구 100%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 80%이하,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100%이하(집단시설지구 150%이하), 농공단지 150%이하임.
- 너.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용적률 완화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51조)
- 더.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52조)
- 러.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 구성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함.(안 제53조 내지 제63조)
- 며.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변경지정 될 때까지 건폐율(60%) 및 용적률(230%)에 대한 경과조치를 정함.(안 부칙 제4조)
- 버. 관리지역이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거나 변경 지정될때까지 행위제한 및 건폐율·용적률을 정함.(안 부칙 제4조)

3. 법적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없음

(2) 입법예고

가) 입법예고기간 : 2003. 5. 21 ~ 2003. 6. 10(20일간)

나) 예고방법 : 신문게시공고(경남신문, 도민일보) 및 인터넷·게시판(양청사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공고

다) 의견제출 내용 및 반영 : 22건 제출(반영 : 19건, 미반영 : 3건)

○ 조례(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의견제출 반영·미반영 내용

- 의견내용 : 세부내용 따로붙임

-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안 제6조) 수정 : 반영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안 제10조) 수정 : 반영
- 조건부 허가 (안 제11조) 삭제 : 반영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안 제13조) 수정 : 반영
-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안 제6조) 삭제 : 반영
-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안 제29조) 수정 : 반영
-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안 제30조) 수정 : 미반영
-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안 제32조) 수정 : 반영
-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안 제34조) 수정 : 반영
-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안 제35조) 수정 : 반영
-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안 제42조) 수정 : 반영
-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안 제44조) 삭제 : 반영
- 향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안 제45조) 수정 : 반영
-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안 제47조) 수정 : 반영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안 제48조) 수정 : 반영
- 건폐율의 강화 (안 제50조) 수정 : 반영

-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안 제52조) 수정 : **미반영**
- 기타 용도지역·용도지구등의 용적률 (안 제53조) 수정 : 반영
- 공공시설로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안 제55조) 삭제 : 반영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용적률 및 층수 경과조치 (안 부칙 제5조) 삭제 : 반영
- 관리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건폐율·용적률 (안 부칙 제6조) 수정 : 반영 1건, **미반영 1건**

(3) 규제심사 : 있음

가)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일자 : 2003. 7. 25 (금) 14:00

나) 심의결과 : 수정가결

- **권고내용** : 사천시도시계획조례(안) 제35조의규정에 의한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을 허용
- **조례수용내용** : 사천시도시계획조례(안) 제35조의규정에 의한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권고내용 수용

사천시도시계획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2장 도시관리계획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4조(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지역케이블 방송 또는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과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관리계획의 재공고·열람) ①영 제22조제5항에 규정한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영 제22조제7항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은 제4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 계획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5. 영 제46조제6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규칙 제3조제2항 각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제2절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7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8조(매수하지 아니하거나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토지안에서의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7조제7항 각호의 토지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은 당해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건축기준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높이 4미터 이하인 공고탑, 광고판과 높이 2미터 이하인 옹벽 또는 담장

제3절 제1종지구단위계획

제9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제3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0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
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1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제1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제56조 별표 1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2. 표고가 100미터 미만인 토지
 3.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주변 용지의 총 입목 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은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영 제56조 별표 1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를 개발행위와 같이 설치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개발행위와 같이 설치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4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영 제56조 별표 1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15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영 제56조 별표 1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는 지역일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상황·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5. 자연석의 채취는 재해예방이나 도시정비를 위한 경우 외에는 경관보전상 허가하지 아니할 것
6.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시는 시가화 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할 것

제16조(토지분할제한면적) 영 제56조 별표 1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17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제56조 별표 1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대기·수질·토질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각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1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미만

제1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산정·방법)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림법시행규칙 제9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

제1절 지역안에서의 건축행위

제21조(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호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가구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건축물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종교집회장으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건축물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동호마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제22조(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호 별표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건축물에 한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종교집회장으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건축물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동호마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제23조(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3호 별표 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야구연습장과 종교집회장으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있는 건축물,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과 종교집회장으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는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냉동·냉장창고는 제외한다)
-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세차장
-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24조(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71조제1항제4호 별표 5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과 종교집회장으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있는 건축물,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세차장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25조(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5호 별표 6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과 종교집회장으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있는 건축물,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동호가목 내지 라목은 제외한다)

제26조(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6호 별표 7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제27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제71조제1항제7호 별표 8 제1호 바목 및 사목에 의한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30미터(주거지역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이내의 지역안에서는 건축할 수 없다.

②영 제71조제1항제7호 별표 8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타미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출판업·인쇄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제28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제71조제1항제8호 별표 9 제1호 가목의 공동주택은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하인 것

②영 제71조제1항제8호 별표 9 제1호 아목 및 자목에 의한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과 위탁시설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30미터(주거지역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이내의 지역안에서는 건축할 수 없다.

③영 제71조제1항제8호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타미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출판업·인쇄업 및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제29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제71조제1항제9호 별표 10 제1호 나목의 공동주택은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하인 것

②영 제71조제1항제9호 별표 10 제1호 차목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30미터(주거지역 경계가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이내의 지역안에서는 건축할 수 없다.

③영 제71조제1항제9호 별표 10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출판업·인쇄업 및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세차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30조(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0호 별표 1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31조(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1호 별표 1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전용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32조(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2호 별표 1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중 기숙사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33조(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3호 별표 1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34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4호 별표 15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중학교 · 고등학교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 저장소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5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5호 별표 16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중학교 · 고등학교 · 교육원(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6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6호 별표 17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과 동호 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
 - 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 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 다.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제37조(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7호 별표 18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과 중학교·고등학교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8조(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8호 별표 1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과 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 시설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9조(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 20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제2호 중 휴게음식점 및 제3호중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은 별표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시장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마.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 제조시설을 제외한다.
 - 바.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 사.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 아. 섬유제조시설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제40조(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0호 별표 2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 저장소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1조(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1호 별표 2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가목 · 바목 ·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2절 지구안에서의 건축행위

제42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31조 제2항제5호다목의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 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 · 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시장, 쇼핑센터, 대형점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동호가목 및 나목에 한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3조(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8조제1항 별표 2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인 경우에는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건축물에 한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제44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축사
2. 퇴비사
3. 잠실
4. 창고(저장 및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5. 생산시설(단순가공시설을 포함한다)
6.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양어장
8.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의 건축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주택의 증축(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 나. 부속건축물의 건축(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건축물에 부속되는 것에 한하되,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신축·증축·재축 또는 대수선을 말한다)
9. 마을공동시설의 설치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 새마을회관의 설치
 - 나. 기존정미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증축 및 이축
 - 다.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 라.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유류판매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10. 공익시설·공용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설치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 나.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의 설치
 - 다. 보건소·경찰파출소·소방파출소·우체국 및 읍·면·동사무소의 설치
 - 라. 공공도서관·전신전화국·직업훈련소·연구소·양수장·초소·대피소 및 공중 화장실과 예비군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의 공동구판장·하치장 및 창고의 설치
 - 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 아. 교정시설의 설치
 - 자. 야외음악당 및 야외극장의 설치
11. 광공업 등을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개발진흥지구 지정 당시 이미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공장, 수출품의 생산 및 가공공장,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공장 그 밖에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는 공장의 증축(증축면적은 기존시설 연면적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 이하로 하되, 증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증축할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과 부대시설의 설치
 - 나. 개발진흥지구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기존공장 부지안에서의 건축에 한한다)
 - 다. 토석의 채취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12. 기존 건축물의 동일한 용도 및 규모안에서의 개축·재축 및 대수선
13. 개발진흥지구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그 공사에 소요되는 블록·시멘트벽돌·쇄석·레미콘 및 아스콘 등을 생산하는 가설공작물의 설치
14.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용도변경행위
- 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를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신축이 허용되는 건축물로 변경하는 행위
 - 나. 공장의 업종변경(오염물질 등의 배출이나 공해의 정도가 변경전의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공장·주택 등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일용품소매점·취사용가스판매점·일반음식점·다과점·다방·이용원·미용원·세탁소·목욕탕·사진관·목공소·의원·약국·접골시술소·안마시술소·침구시술소·조산소·동물병원·기원·당구장·장의사·탁구장 등 간이운동시설 및 간이수리점에 한한다) 또는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행위
15. 종교시설의 증축(새로운 대지 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증축면적은 개발진흥지구 지정 당시의 종교시설 연면적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3절 건폐율 및 용적률

제4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46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47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40퍼센트 까지 낮출 수 있다.

제48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3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7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3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7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51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 각호 규정의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까지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2조(공공시설로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 아파트지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a)/(1-a)] \times (\text{제4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5장 도시계획위원회

제53조(기능 및 업무) 법 제113조제2항 및 영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시 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 또는 재 위임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자문
3. 도시계획조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자문
4.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5.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5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의 공무원
3. 토지이용·교통·환경·건축·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6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57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분과위원회는 안건별로 수시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 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9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행정기관 및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0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1조(회의록) ①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6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64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제65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사천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6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사천시도시계획조례[조례 제497호(2001. 12. 19)], 사천시 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조례 제442호(2000. 10. 12)], 사천시 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조례 제524(2002. 8. 14)]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영 부칙 제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 될 때까지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이하 및 2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관리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1항 별표 27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목의 1과 같다. 다만, 제2호의 휴게음식점, 제3호중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별표의 지역에 한하여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인 경우에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다목적 내지 다목적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제38조제7호에 해당하는 공장 및 제39조제9호에 해당하는 공장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 건폐율 40퍼센트 이하 용적률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별표】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바.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사.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 아.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 주 : 1) “집수구역”이라 함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 2) “유하거리”라 함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잦 거리를 말한다.
- 3) “제1지류”라 함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관계법령발췌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법률 제6655호)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7조(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③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개발행위의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3.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제114조(운영세칙)

②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 17816 호)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⑤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④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5. 제46조제6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제41조(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⑤법 제47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허용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3. 공작물

제43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①법 제5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7.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

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범위 안에서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2.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9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②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그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방법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림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제77조(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학교시설보호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 및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학교·공용시설 또는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

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

제79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③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각호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④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77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⑥법 제77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③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각호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④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

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⑤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1. 상업지역
2. 아파트지구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제114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부 칙

제9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②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용도 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당해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6891호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령 별표 18의 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각각 60퍼센트 이하 및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다.

제13조(관리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부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별표 27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법 부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공통분야	<p>(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p> <p>(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p> <p>(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경사도·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p>
나. 도시관리 계획	<p>(1)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할 것</p> <p>(2)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p>
다. 도시계획 사업	<p>(1) 도시계획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제외한다)</p> <p>(2)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p>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p>(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p> <p>(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정,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검토분야	허가기준
	(3)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마. 기반시설	(1)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2) 너비 4미터(건축법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고, 그 도로는 인근도로와 연결되어야 하며,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바. 그 밖의 사항	(1)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계획에 적합할 것 (2)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토지의 형질변경	(1)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숫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

검토분야	허가기준
나. 토지의 형질변경	(2)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다. 토석채취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토지분할	<p>(1)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p> <p>(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이하 이 칸에서 “분할제한면적”이라 한다)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p> <p>(가) 녹지지역안에서의 기존묘지의 분할</p> <p>(나)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다)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p> <p>(라) 국·공유의 잡종재산중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고자 하는 부분의 분할</p> <p>(마)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분할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검토분야	허가기준
라. 토지분할	<p>1) 분할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p> <p>2) 분할 전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p> <p>3)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p> <p>(3)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p>
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p>당해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고, 당해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p>

【별표 2】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가구주택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동호마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별표 3】

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동호마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

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 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

중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세차장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 5】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5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5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과 관람장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

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 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별표 4 제2호아목의 공장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 6】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5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과 관람장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

외 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아. 별표 4 제2호 아목의 공장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 7】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별표 8】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7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동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출판업·인쇄업 및 기록매체 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 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9】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동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10】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9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세차장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 11】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0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 12】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가목·나목·차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가목·나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한한다)· 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

【별표 13】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2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중 기숙사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

【별표 14】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3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

【별표 15】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중학교·고등학교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6】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5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운동장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다목적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수산물)

업용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7】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과 동호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 (3)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아파트형공장·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아목(1) 내지 (5)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8】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과 중학교·고등학교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동호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9】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8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가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동호가목·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과 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동호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 및 나목과 바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운동장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나목·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별표 19 제2호사목(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21】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0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노 및 쓰레기처리시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2】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가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으로 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3】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의 1에 해당

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사목(1) 내지 (4)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별표 27】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부칙 제12조제1항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한방병원을 제외한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 및 나목과 바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운동장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인 경우에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다목적 마목에 해당하는 것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차. 별표 19 제2호사목 및 별표 20 제2호차목의 공장
-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 345 호)

제12조(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영 별표 20 제2호 각목외의 부분 및 영 별표 27 제2호각목외의 부분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의 지역을 말한다.

【별표】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제12조관련)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바.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사.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 아.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 주 : 1) “집수구역”이라 함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 2) “유하거리”라 함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잦 거리를 말한다.
- 3) “제1지류”라 함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4.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 바.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 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 사.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관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가. 일반음식점·기원
-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 마.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 아. 게임제공업소,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장 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미만인 것
-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 타.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 가.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다.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라.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마.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바.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6. 판매 및 영업시설

-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03.2.24]
-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03.2.24]
-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03.2.24]
 -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개정 2003.2.24]
 - (2) 제4호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 마. 철도역사
- 바. 공항시설
- 사.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7. 의료시설

- 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 나.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다. 장례식장

8.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가.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사.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보육시설을 말한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아.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자.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9. 운동시설

가. 4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뉘시4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1.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2.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삭제 [2003.2.24]

라.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마.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바. 무도장과 무도학원

13.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4.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1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소방법,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을 허가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다. 위험물제조소

라. 위험물저장소

마. 액화가스취급소

바. 액화가스판매소

사. 유독물보관·저장시설

아.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6.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 마. 매매장
- 바. 정비공장
- 사. 운전학원·정비학원
- 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
기장

17.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 나.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다. 도축장
- 라. 도계장
- 마. 버섯재배사
- 바. 종묘배양시설
-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을 제외한다)

18.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가. 분뇨·폐기물처리시설
- 나. 고물상
-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19. 공공용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 다. 군사시설
- 라. 발전소(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포함한다)
- 마.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 바. 전신전화국
- 사.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아. 통신용시설

20. 묘지관련시설

- 가. 화장장

- 나. 납골당(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1. 관광휴게시설

- 가. 야외음악당
- 나. 야외극장
- 다. 어린이회관
- 라. 관망탑
- 마. 휴게소
-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도시계획조례 위임근거별 조례반영 내용

위임 근거법	제목	법령 위임내용	
법 제28조 제4항	도시관리계획 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의견청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의 조례로 정한다.	(안 제43조) 법 제28조제4항은 주민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영 제22조 제2항		②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로부터 송부 받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당해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열람 지역케이 면·동 여 도시 여야 한다

위임 근거법	제목	법령 위임내용	
영 제22조 제5항	도시관리계획 의 재공고· 열람	○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해당 시의 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 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안 제5 ①영 제 사항이 의 사항 ②제1항 람은 제4

위임 근거법	제목	법령 위임내용	
영 제25조 제4항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 경사항	<p>○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p>(안 제6... 영 제2... 지구단위... 당하는... 단서의... 및 도시... 치지 아... 할 수 있... 1. 지구단... 역·용... 대한 ... 각호의... 2. 가구(... 일단의... 퍼센트</p>

위임 근거법	제 목	법령 위임내용	
법 제47조 제3항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기간 및 이율	<p>○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p> <p>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중 전구을 영업유류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5. 제46조 제6항 제2호는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1년치의 최고액 금중대역의 평행행상 영역야 6. 건축선의 전미터 상환기간 변경을 용우시의 7.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p> <p>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 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 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 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p> <p>9.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규칙 제3조제2항)</p>	<p>(안 제7 3. 획지면 도시계획 4. 건축물 가경면과 정 정행 제 채1항3호 예 환출선 된 경환 변경인</p> <p>8. 지구단 결정된 도지역 구면적· 선의 변</p> <p>9. 규칙 항의 변</p>

위임 근거법	제목	법령 위임내용	
영 제41조 제5항	매수하지 아니하거나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토지 안에서 의 건축물 등	<p>○ 법 제47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 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시의 조례로 따로 허용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p> <p>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 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p> <p>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p> <p>3. 공작물</p>	<p>(안 제83 영 제41조 제47조제 가능한 는 구역 음 각호 철근콘크 트조가 1. 건축법 단독주 2. 건축법 근린생활 을 목적 한한다) 3. 높이 4 높이 2</p>

위임 근거법	제목	법령 위임내용	
영 제43조 제1항 제7호	제1종 지구단 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7.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으로서 시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안 제9 시장은 에 의하 지역을 정할 수 1. 건축 확보 등 환경정 2. 건축 필요한 3. 문화 등으로 있는 지 4. 독특 친환경

위임 근거법	제목	법령 위임내용	
영 제5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p>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시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p>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p>	<p>(안 제10)</p> <p>영 제53조</p> <p>중 허가를 미한 행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 항에 의 제1항의 에 해당 2. 공작물 <p>가. 도시 에서 두 세제곱 제곱미터 만, 건축 호의 1</p>

위임 근거법	제목	법령 위임내용	
		<p>(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p> <p>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p> <p>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p>	<p>(통신용 이를 포함 나. 도시 단위계획 톤 이하 수평투 공작물 제118조 공작물(계없이 한다. 다. 녹지 안에서 우스안에 외한다)의</p>

위임 근거법	제목	법령 위임내용	
		<p>3. 토지의 형질변경</p> <p>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p> <p>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p>	<p>3. 토지의 형질변경</p> <p>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p> <p>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p>

위임 근거법	제목	법령 위임내용	
		<p>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p> <p>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p> <p>4. 토석채취</p> <p>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p> <p>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p>	<p>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p> <p>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p> <p>4. 토석채취</p> <p>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p> <p>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p>

위임 근거법	제목	법령 위임내용	
		<p>5. 토지분할</p> <p>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p> <p>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p> <p>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 하기 위한 분할</p> <p>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p> <p>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p>	<p>5. 토지분할</p> <p>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p> <p>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p> <p>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 하기 위한 분할</p> <p>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p> <p>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p>

위임 근거법	제목	법령 위임내용	
		<p>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p> <p>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p> <p>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p>	<p>6. 물건을</p> <p>가. 녹지</p> <p>물건을</p> <p>토지에</p> <p>50세제</p> <p>놓는 행</p> <p>나. 관리</p> <p>정된 지</p> <p>쌓아놓</p> <p>토지에</p> <p>피 500</p> <p>놓는 행</p>

위임 근거법	제목	법령 위임내용	
영 제55조 제1항	개발행위허가 의 규모	<p>①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시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p> <p>1. 도시지역</p> <p>가.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p> <p>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p> <p>다.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p> <p>2.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p> <p>3.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p> <p>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p>	<p>(안 제11)</p> <p>영 제55조</p> <p>여 관리</p> <p>지의 형</p> <p>가할 수</p> <p>같다.</p> <p>1. 보전관</p> <p>2. 생산관</p> <p>3. 계획관</p> <p>4. 농림지</p>

위임 근거법	제목	법령 위임내용	
영 제56조 [별표1] 제1호가목 (3)	개발행위허가 의 기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 우에는 <u>표고·경사도·임상 및 인근 도로</u> <u>의 높이, 배수 등을 참작하여 시의 조례가</u> <u>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u>	(안 제12 ①영 제 규정에 는 기준 1. 경사도 2. 표고기 3. 개발 토지의 치하는 50퍼센트 ②제1항 의 규정 하는 경

위임 근거법	제목	법령 위임내용	
영 제56조 [별표1] 제2호가목 (2)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 에서의 건축 물의 건축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 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 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 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 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u>시의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안 제13 영 제56조 에 의하 가 설치 도 무질 하는 범 건축을 변경 허 는 경우 1. 신청 되어 있 기존시 및 하수 설치하

위임 근거법	제목	법령 위임내용	
			<p>2. 참고 필요로 하고자 되어 있 위와 같</p> <p>3. 생산부 관리지 지역안 광업에 에서 거 및 그 한다)을 토지의</p>

위임 근거법	제목	법령 위임내용	
영 제56조 [별표1] 제2호나목 (2)	토지의 형질 변경시 안전 조치	나. 토지형질변경 : (2) 토지의 형질변경 에 수반되는 <u>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u> <u>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u> <u>설치 등 시의 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를</u> <u>할 것</u>	(안 제1 영 제56 조에 의 반되는 또는 절 의 안전 1. 상단면 사정이 반대방 흘러가 2. 토사기 옹벽· 하고, 의하여 하게 하

위임 근거법	제목	법령 위임내용	
			<p>3. 비탈면 리트옹벽 시행규칙</p> <p>4. 경사지 경우에 토된 흙 되지 여야 한</p> <p>5. 옹벽은 내려앉 고, 그 표준시</p> <p>6. 석축은 대비하 방법을 위한 뜻 특히 배수공</p>

위임 근거법	제목	법령 위임내용	
영 제56조 [별표1] 제2호다목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다. 토석채취 :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 제15 영 제56조 에 의하 토석의 와 같다. 1. 소음 피해가 2. 운반 수반되 형질변 지역으 자연경 것

위임 근거법	제목	법령 위임내용	
			<p>3. 보호 아닐 것</p> <p>4. 공원 지역으로 경관· 있는 지</p> <p>5. 자연스 정비를 허가하</p> <p>6. 지하 채취허 지역으로 한하도</p>

위임 근거법	제목	법령 위임내용	
영 제56조 [별표1] 제2호라목 (1)	토지분할제한 면적	라. 토지분할 : (1)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 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u>건축법 제49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u> <u>으로서 시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u> <u>로 분할할 것</u>	(안 제1 영 제56 조에 의 법령에 아니하고 할제한 로 한다.

위임 근거법	제목	법령 위임내용	
영 제56조 [별표1] 제2호마목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p>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 당해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고, 당해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경우로서 시의 <u>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u></p>	<p>(안 제11 영 제56조 에 의하 대한 허가 1. 물건- 소음· 피해가 2. 물건을 각통로 하지 아 3. 보호- 아닐 것 4. 공원 지역으로 인하여 손상될</p>

위임 근거법	제목	법령 위임내용	
법 제59조 제2항 제3호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개발행위의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p> <p>3. <u>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시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u></p>	(안 제18 법 제59조 주거지역 시행하는 에는 시 치지 아 1. 토지의 가. 주거 제공미 나. 공업 2. 토석 미만

위임 근거법	제목	법령 위임내용	
법 제69조 제2항 제3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가 편제방법 공공단체	<p>②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함)은 환경외침방지 대책은 경제반사작용의 증진, 유흥의 팽창, 환경외침되는 환경, 우장관 및 통령행이필요한 비정위에발위안외세행일체, 하기 원청에 관한 행위허관을사행는및자예치행예금 이행보증금을 예한하게이할경우 있다. 지역만,또단음계착환외지역안양우안불안야차차기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에 예치금액의 산정비가제정준칙 1항의공단체에 시행하는 개발행위 포함하여 정한다.</p>	(안 제21 (법) 영제 80 행외증담 제5호의 법에기한 중요의 필요한 ②제1항의 또는 제 개발행위 금액은 규정에

- . 위임근거 : 영 제71조제1항제1호 【별표 2】 제2호
- . 제 목 :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법령 위임내용
<p>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가구주택</p> <p>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p> <p>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p> <p>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u>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u></p> <p>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u>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동호마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u></p> <p>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p> <p>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p>

- . 위임근거 : 영 제71조제1항제2호 【별표 3】 제2호
- . 제 목 :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법령 위임내용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동호마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 위임근거 : 영 제71조제1항제3호 【별표 4】 제2호

●. 제 목 :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법령 위임내용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세차장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 . 위임근거 : 영 제71조제1항제4호 【별표 5】 제2호
- . 제 목 :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

법령 위임내용
<p>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5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p> <p>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u>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u></p> <p>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과 관람장을 제외한다)</p> <p>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p> <p>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u>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u></p>

축물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별표 4 제2호아목의 공장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 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 위임근거 : 영 제71조제1항제5호 【별표 6】 제2호

●. 제 목 :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법령 위임내용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
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과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
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아. 별표 4 제2호 아목의 공장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 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 . 위임근거 : 영 제71조제1항제6호 【별표 7】 제2호
- . 제 목 :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법령 위임내용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 . 위임근거 : 영 제71조제1항제7호 【별표 8】 제1호·제2호
- . 제 목 :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법령 위임내용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출판업·인쇄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
하는 것

- . 위임근거 : 영 제71조제1항제8호 【별표 9】 제1호·제2호
- . 제 목 :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법령 위임내용
<p>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u>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u></p> <p>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p> <p>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p> <p>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p> <p>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u>공동주택으로서 제1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u></p>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 위임근거 : 영 제71조제1항제9호 【별표 10】 제1호·제2호

●. 제 목 :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법령 위임내용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세차장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 위임근거 : 영 제71조제1항제10호 【별표 11】 제2호

●. 제 목 :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법령 위임내용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 위임근거 : 영 제71조제1항제11호 【별표 12】 제2호

●. 제 목 :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법령 위임내용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가목·나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

●. 위임근거 : 영 제71조제1항제12호 【별표 13】 제2호

●. 제 목 :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법령 위임내용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중 기숙사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

●. 위임근거 : 영 제71조제1항제13호 【별표 14】 제2호

●. 제 목 :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법령 위임내용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

●. 위임근거 : 영 제71조제1항제14호 【별표 15】 제2호

●. 제 목 :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법령 위임내용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중학교·고등학교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 위임근거 : 영 제71조제1항제15호 【별표 16】 제2호

●. 제 목 :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법령 위임내용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다목적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 위임근거 : 영 제71조제1항제16호 【별표 17】 제2호

●. 제 목 :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법령 위임내용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과 동호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
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아파트형공장·도정공장 및 식품
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아목(1) 내지 (5)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위임근거 : 영 제71조제1항제17호 【별표 18】 제2호

●. 제 목 :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법령 위임내용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과 중학교·고등학교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동호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 위임근거 : 영 제71조제1항제18호 【별표 19】 제2호

●. 제 목 :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법령 위임내용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동호가목·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과 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제4호의 제2종근린 생활시설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동호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 위임근거 : 영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 20】 제2호

●. 제 목 :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법령 위임내용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나목·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별표 19 제2호사목(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 . 위임근거 : 영 제71조제1항제20호 【별표 21】 제2호
- . 제 목 :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법령 위임내용
<p>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u>제1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u></p> <p>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p> <p>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p> <p>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p> <p>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p> <p>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p> <p>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p> <p>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p> <p>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p> <p>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p>

●. 위임근거 : 영 제71조제1항제21호 【별표 22】 제2호

●. 제 목 :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법령 위임내용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가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 위임근거 : 영 제77조제1항

●. 제 목 : 향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법령 위임내용

①학교시설보호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 및 향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학교·공용시설 또는 향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임근거 : 영 제78조제1항 【별표 23】 제2호

●. 제 목 :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법령 위임내용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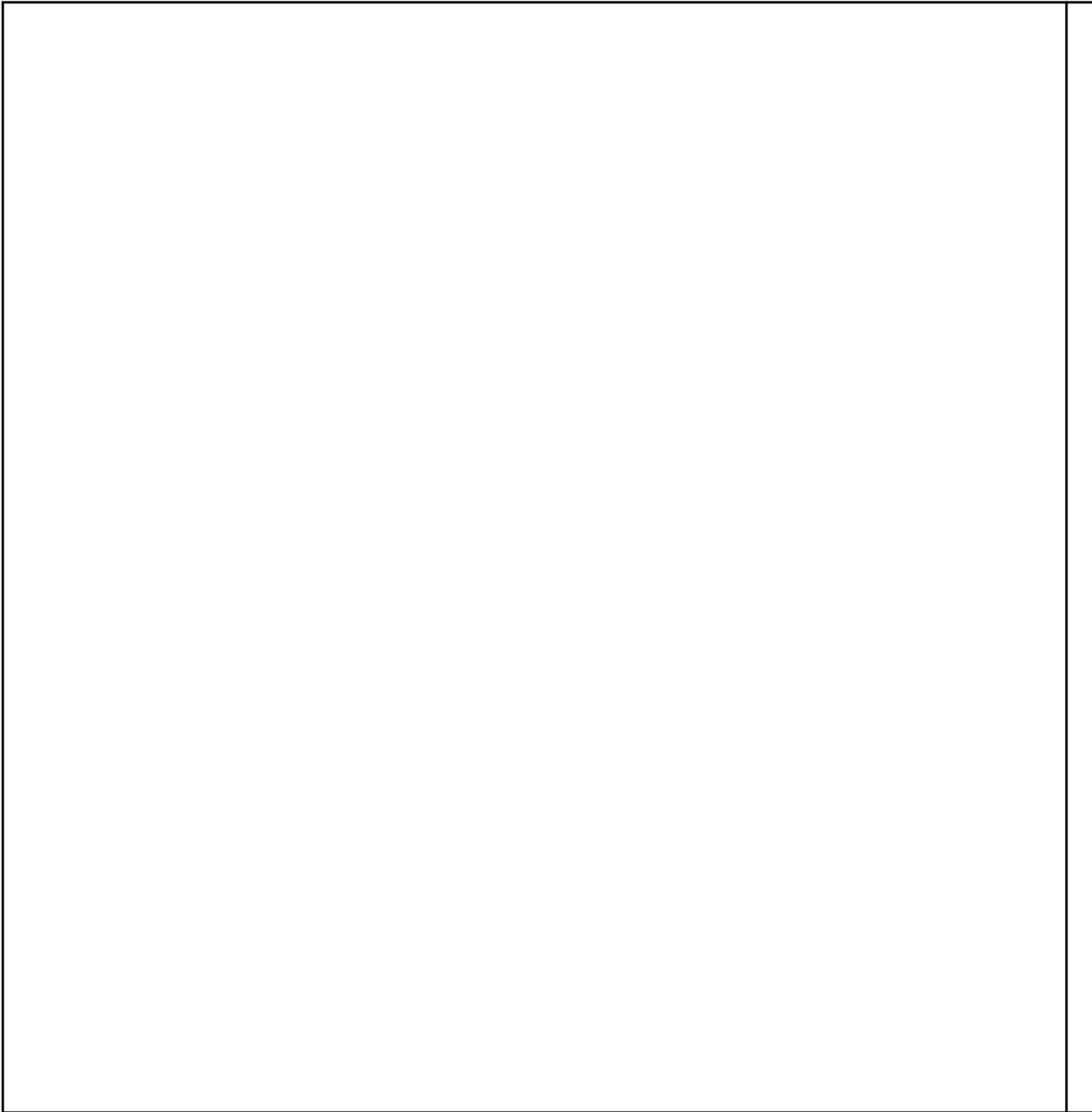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사목(1) 내지 (4)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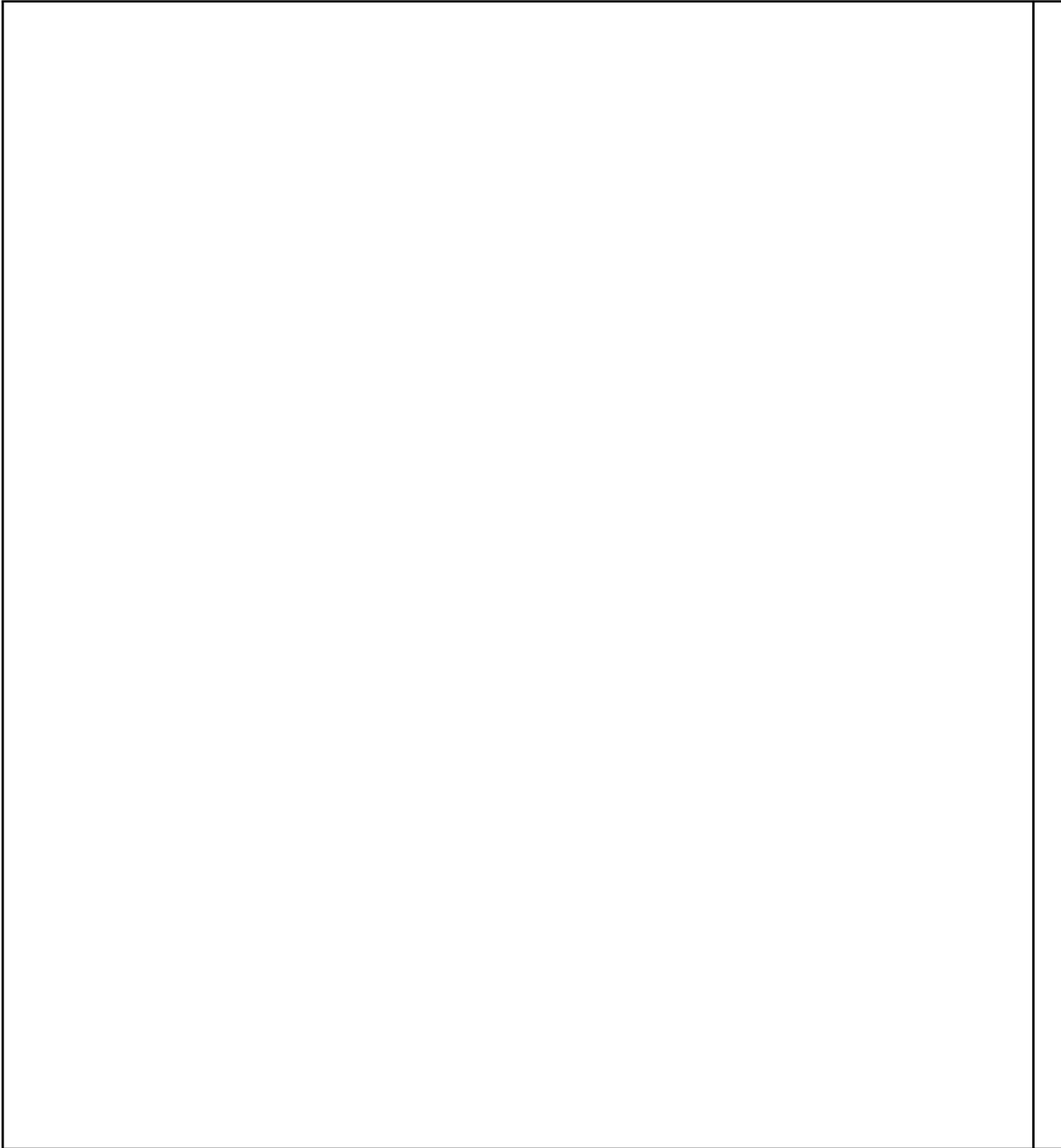
●. 위임근거 : 영 제7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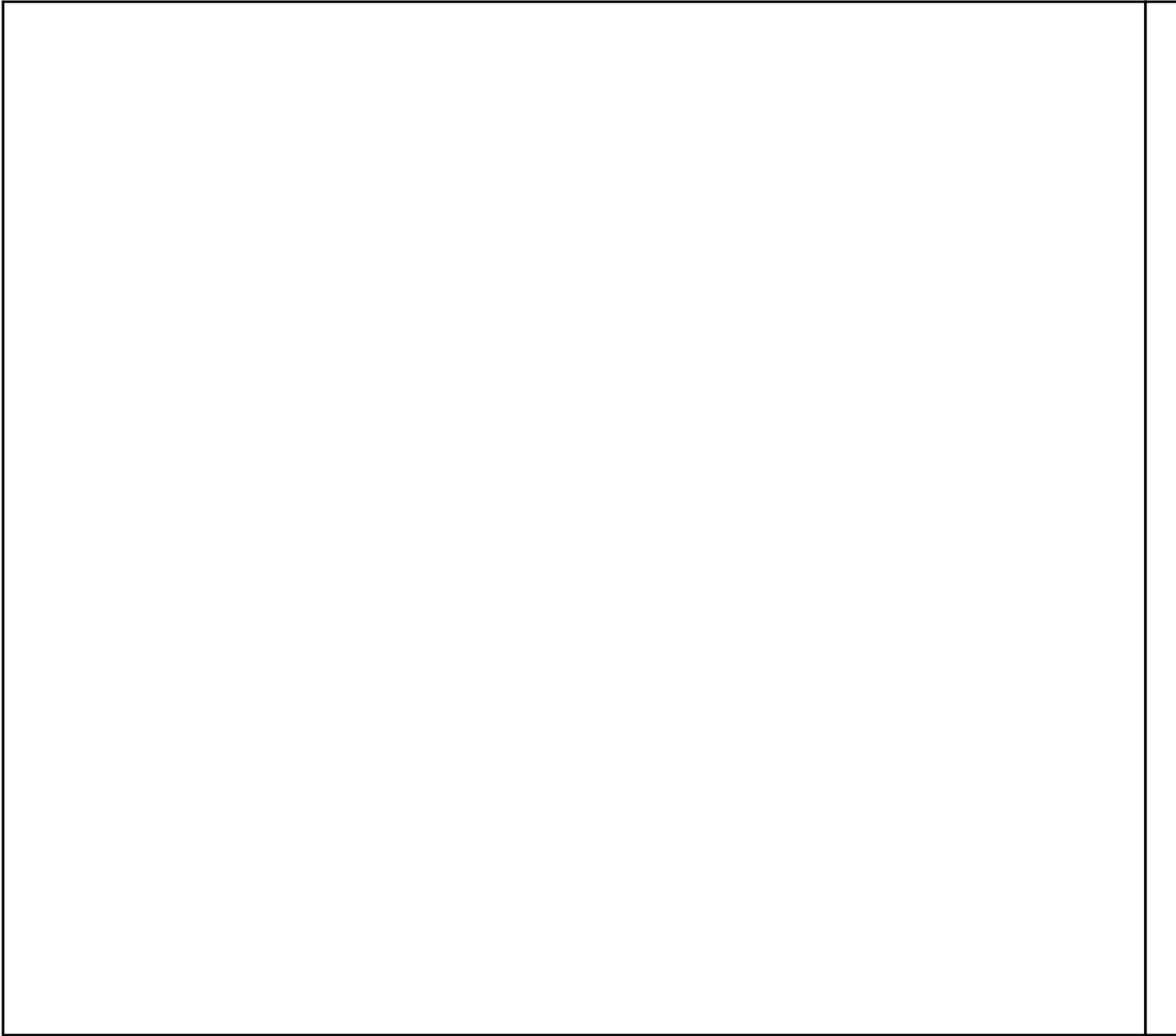
●. 제 목 :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법령 위임내용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위임근거 : 영 부칙 제13조제1항 【별표 27】 제2호
- 제 목 :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법령 위임내용
<p>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p> <p>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u>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u></p> <p>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p> <p>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u>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u></p> <p>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p> <p>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인 경우에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p> <p>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p> <p>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다목적 내지 다목적에 해당하는 것</p> <p>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p>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차. 별표 19 제2호사목 및 별표 20 제2호차목의 공장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위임 근거법	제목	법령 위임내용	
영 제59조 제2항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산정·방법	②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u>그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방법은 시의 조례로 정한다.</u> 이 경우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림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안 제2 ①영 제 행보증금 제5호의 의 기반 경오염의 필요한 ②제1항 또는 계 개발행위 금액은 규정에

위임 근거법	제목	법령 위임내용	
영 제84조 제1항	용도지역안에 서의 건폐율	<p>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시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안 제45조 영 제84조 지역안에서 같다. 1. 제1종 2. 제2종 3. 제1종 4. 제2종 5. 제3종 6. 준주거 7. 중심상

위임 근거법	제목	법령 위임내용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8. 일반상 9. 근린상 10. 유통 11. 전용 12. 일반 13. 준공 14. 보전 15. 생산 16. 자연 17. 보전

위임 근거법	제목	법령 위임내용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 19. 계획 20. 농림 21. 자연

위임 근거법	제목	법령 위임내용	
영 제84조 제3항	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	<p>③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각호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시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 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p>(안 제46조)</p> <p>영 제84조 각호1에 등의 건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락지 2. 도시지 3. 수산지

위임 근거법	제목	법령 위임내용	
		<p>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 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p> <p>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p> <p>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p>	<p>4. 자연- 공원보</p> <p>5. 산업입 5호 다 60퍼센트</p> <p>6. 공업지 발에관 나목의 및 지방</p>

위임 근거법	제목	법령 위임내용	
영 제84조 제4항	건폐율의 강화	④시장이 법 제77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 한도의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안에서 시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 제4 영 제84 시지역 지하기 할 필요 적용할 출 수 있

위임 근거법	제목	법령 위임내용	
영 제84조 제6항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⑥법 제77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 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 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시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안 제4 영 제84 전관리지 역 또는 지법 제 되는 건 이하로

위임 근거법	제목	법령 위임내용	
영 제85조 제1항	용도지역안에 서의 용적률	<p>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등을 감안하여 시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안 제4 ①영 제 각 용도 와 같다. 1. 제1종 2. 제2종 3. 제1종 4. 제2종 5. 제3종

위임 근거법	제목	법령 위임내용	
영 제85조 제1항	용도지역안에 서의 용적률	<p>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p> <p>7. 중심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p> <p>8. 일반상업지역 :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p> <p>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p> <p>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p> <p>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p> <p>12.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p>	<p>6. 준주거</p> <p>7. 중심상</p> <p>8. 일반상</p> <p>9. 근린상</p> <p>10. 유통</p> <p>11. 전용</p> <p>12. 일반</p>

위임 근거법	제목	법령 위임내용	
영 제85조 제1항	용도지역안에 서의 용적률	13.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3. 준공 14. 보전 15. 생산 16. 자연 17. 보전 18. 생산

위임 근거법	제목	법령 위임내용	
영 제85조 제1항	용도지역안에 서의 용적률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9. 계획 20. 농림 21. 자연

위임 근거법	제목	법령 위임내용	
영 제85조 제3항	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용적률	<p>③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각호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시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안 제50 영 제85조 제3항 각호1에 등의 용적 1. 도시지 발진흥지 2. 수산지 3. 자연 공원보호 자연공원 밀집취락 이하로 한 4. 산업 제5호 지(도시 공단지에

위임 근거법	제목	법령 위임내용	
영 제85조 제4항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p>④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시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p> <p>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p>	(안 제55조) 영 제85조제4항 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시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

위임 근거법	제목	법령 위임내용	
		<p>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p> <p>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p>	<p>하천 그 20미터</p> <p>2. 너비 터 이상 1천제곱</p>

위임 근거법	제목	법령 위임내용	
영 제85조 제5항	공공시설로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p>⑤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시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업지역 2. 아파트지구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p>(안 제52조)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시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p> <p>대지의 용적률을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 $= \frac{\text{대지의 용적률}}{1 + \text{공공시설부지 비율}}$ 각호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시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p>

위임 근거법	제목	법령 위임내용	
			이 경우 공공시설 비율을

위협 근거법	제목	법령 위함내용	
명 제1항제1조 제2항제2항 영 제114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경과 조치	<p> ① 2014년 11월 20일 제114조 제2항 당시의 일반주거지역(도시계획순차계획위원회 및 환경개선위원회 임명 설치 및 운영 규정 제3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사항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p> <p>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 까지 당해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제1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p> <p>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 까지 당해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제1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p>	1인 제1항 2인 제1항 3인 제1항 4인 제1항 5인 제1항 6인 제1항 7인 제1항 8인 제1항 9인 제1항 10인 제1항 11인 제1항 12인 제1항 13인 제1항 14인 제1항 15인 제1항 16인 제1항 17인 제1항 18인 제1항 19인 제1항 20인 제1항 21인 제1항 22인 제1항 23인 제1항 24인 제1항 25인 제1항 26인 제1항 27인 제1항 28인 제1항 29인 제1항 30인 제1항 31인 제1항 32인 제1항 33인 제1항 34인 제1항 35인 제1항 36인 제1항 37인 제1항 38인 제1항 39인 제1항 40인 제1항 41인 제1항 42인 제1항 43인 제1항 44인 제1항 45인 제1항 46인 제1항 47인 제1항 48인 제1항 49인 제1항 50인 제1항 51인 제1항 52인 제1항 53인 제1항 54인 제1항 55인 제1항 56인 제1항 57인 제1항 58인 제1항 59인 제1항 60인 제1항 61인 제1항 62인 제1항 63인 제1항 64인 제1항 65인 제1항 66인 제1항 67인 제1항 68인 제1항 69인 제1항 70인 제1항 71인 제1항 72인 제1항 73인 제1항 74인 제1항 75인 제1항 76인 제1항 77인 제1항 78인 제1항 79인 제1항 80인 제1항 81인 제1항 82인 제1항 83인 제1항 84인 제1항 85인 제1항 86인 제1항 87인 제1항 88인 제1항 89인 제1항 90인 제1항 91인 제1항 92인 제1항 93인 제1항 94인 제1항 95인 제1항 96인 제1항 97인 제1항 98인 제1항 99인 제1항 100인 제1항

위임 근거법	제목	법령 위임내용	
영 부칙 제13조제2 항	관리지역안에서 의 건폐율 및 용적률	②법 부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 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시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이하 및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안 부칙 ②영 부 하여 관 리지역안 용적률은 관리지역 대하여는 적률 150